##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6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추미애 · 송옥주 · 이재정

복기왕・맹성규・김 현

김병기 · 허성무 · 이광희

김남근 · 김 윤 · 권향엽

최민희 • 강유정 • 송재봉

김주영 • 이병진 • 김성환

황명선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 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 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 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u>&lt;신 설&gt;</u>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u>
	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
	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
	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
	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
	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
	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다.</u>
<u>제33조의3</u> (재생원료 사용 제품·	<u>제33조의4</u> (재생원료 사용 제품·
용기의 구매촉진) (생 략)	용기의 구매촉진) (현행 제33조
	의3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
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에 해당하는 제품ㆍ용기의 제
조자

② ~ ⑥ (현행과 같음)